

<의안번호 제2006-12호>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06. 3. 15
- 나. 제출자 : 신주범의원 외 6명
- 다. 상정일자 : 2006. 3. 17

2. 제안이유

- 작년에 우리 군에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무상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거창군운동본부”가 결성되었고, 11월 4,500여명주민의 서명을 받아 무상급식 원칙의 확인, 지역의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사용,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민발의 조례제정청구안을 집행부에 접수시켰습니다. 이에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을 청구한 거창군 지역주민과 운동본부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교육도시로서의 거창군의 위상과 면모를 드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명을 개정
 -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 ⇒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여 군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함(안 제1조).

-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 ‘식품비’, ‘식재료’, ‘학교급식비’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학교급식 식품비의 예산지원, 지원방법,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학교급식관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거창군 무상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14개 단체가 참여를 하여 거창군 운동본부를 출범 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가 집행부를 거쳐 의회에 의안으로 접수된 사실에 대하여 조례청구 주요내용이 기존조례와 대다수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 기존의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민들이 원하는 근본취지를 담고 또한 교육도시 거창군의 위상과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기존 유사한 조례가 있음에도 주민청구 조례라는 이유로 반드시 제정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고, 주민들의 원하는 바를 행정에 발빠른 행보로 제반 반영하는 모습은 고객만족 행정과 미래지향적 업무수행으로 높이 평가 됨.
- ※ 관계법령 저촉사항이나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5항의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항과 동일하여 대신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